

-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2648호
----------	--------

2021. 08. 31.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08. 20. 박종호, 심광식 의원
외 8명

나. 회부일자 : 2021. 08. 20. 복지건설위원회

다. 상정일자 : 제2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 08. 31.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심광식 의원)

가. 제안이유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깨끗하고 쾌적한 거
주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유용미생물 공급대상 및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대상기관의 활동계획서 제출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유용미생물 공급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유용미생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훈)

가. 조례 개정 취지 및 배경

-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고 함)에서 활용 중에 있는 유용 미생물(EM:Effective Micro-organisms)의 생산·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생활 및 환경위생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유용미생물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유용미생물이란 일반적으로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방선균 등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미생물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토양개량, 자연·유기농업에 이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미생물들을 일컫음. 이러한 미생물들은 황산화작용, 혹은 황산화 물질을 생성하여 서로 공생하며 부패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그 효과는 대표적으로 ① 악취제거(좋은 공기), ② 물 정화(좋은 물), ③ 철, 식품 등의 산화방지(좋은 환경과 먹거리) 등이 있으며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가능함.

- 구에서는 2016년 4월 1일, 부구청장의 당부사항을 근거로 유용미생물 배양기 및 공급기 설치 계획을 수립함. 이후, 2017년 배양실을 설치하고, 2018년 복합기 2대 설치, 2020년 복합기 1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4개소(양천공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월4·5동주민센터)에서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

【그림 1】 유용미생물 시설 설치 현황(4개소)

			
배양실(양천공원)	복합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복합기 (신월4동주민센터)	복합기 (신월5동주민센터)
2017년 2월 설치	2018년 3월 설치	2018년 3월 설치	2020년 2월 설치

- 이미 운영 중인 유용미생물 관련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은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양천구의 친환경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의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담당부서에서는 2017년 유용미생물 사

업을 실시한 이후 배양재료 구매계획 등을 포함하여 매년 <유용미생물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조사됨.

- 안 제4조는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는 대상으로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향후 기관이나 단체, 법인과의 협력을 위한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는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1항에서는 ①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홍보, ②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 ③ 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 ④ 친환경 공공사업, 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5조제2항에서는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사업의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조문으로 구성됨.
 - 안 제6조에서는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의 책무로서 활동계획서 및 활동결과보고서, 관계 공무원의 점검·조사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7조에서는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8조에서는 공급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영리 목적으로 사용,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안 제9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이미 운영 중인 유용미생물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가정생활 및 환경위생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친환경적인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참고로 우리 구를 포함하여 서울시내 16개 자치구(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에서 유용미생물을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 중 조례를 제정한 곳은 강동구와 도봉구가 있음.

【표 1】 유용미생물 운영 현황(조례 제정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양천구	강동구	도봉구
설치현황	4기 배양기	7기 배양기	2기 배양기
1기 용량	500 ℓ	500 ℓ	2,000 ℓ
배양 방법	유용미생물 업체에서 배양	유용미생물 업체에서 배양	계약직 직원이 배양
센터운영	-	-	운영중
위탁운영	-	-	-
보급주기	일주일 1회(여름철2회)	일주일 1회	일주일 1회
보급대상	양천구민	강동구민	도봉구민
단체, 기관	자율적 수령	활동계획서제출(제출실적없음)	활동계획서제출(제출실적없음)
예산	27,000천원	45,000천원	120,000천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의원 8명, 출석의원 7명 만장일치
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